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인,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이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2건 이하의 신청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등의 금액을 감면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6. 2. 15. ~ 3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##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

제7조제2항제8호 본문 중 “개인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부터 만 30세 미만인 사람까지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”을 “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료의 금액. 다만,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(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) 이하로 한다.

가.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: 우선심사신청료 전액

나. 개인, 소기업 또는 중기업: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. 다만,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85로 한다.

다.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: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50

라. 중견기업: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30

제8조제4항 전단 중 “우선심사청구료”를 “우선심사신청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 
자

7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
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  
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 이 경우  
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 
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~ 7. (생략)

8. 개인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  
부터 만 30세 미만인 사람까  
지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 
경우에는 출원료, 심사청구료,  
최초 3년분의 특허료·실용신  
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 
100분의 85. 다만, 개인이  
「특허법」·「실용신안법」  
또는 「디자인보호법」에 따  
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 
「특허법」·「실용신안법」  
또는 「디자인보호법」별로  
각각 연간 20건(반려되거나 1  
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  
된 것은 제외한다)을 초과하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

7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  
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.

9.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.

9. (현행과 같음)

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료의 금액. 다만,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(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) 이하로 한다.

가.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: 우선심사신청료 전액

나. 개인,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: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. 다만,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85로 한다.

다.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: 우선심사신청료의



다)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할 때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⑤ ~ ⑱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⑤ ~ ⑱ (현행과 같음)